





2017년도 한국보험계리사회
제 54기 정기총회 의사록
2017. 3. 22. (수)

	사무국장	상임이사	부 회장	회 장
결 재				

한국보험계리사회

1. 일 시 : 2016. 3. 22(화) 15:00 ~ 18:00

2. 장 소 : 한국보험계리사회 강의실

3. 참석자 : 41명

4. 총회 성립

- 2016년 12.31일 기준, 총 재적 회원 수 2,540명 중 41명 참석, 위임장 1,324명 등, 총 1,365명으로서 의결정족 과반수 1,270명을 초과하여 총회 성립

5. 회의내용

□ 개회 선언

- 회장

- 회원수 2,540명 중 41명 참석, 위임장 1,324명, 총 1,365명으로 총회 성립을 선언하다.

□ 회장 인사말

- 회장

- 바쁘신 가운데도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 인사 드린다.
- 지난 한해 운영위원, 이사, 위원회, 사무국 및 회원 여러분과 함께 계리사회의 변화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노력하였음을 언급하다.
- IFRS17 도입, 신 지급여력제도 등의 도입이라는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행동이 필요하다.
- 회원 여러분이 교육 및 세미나의 참여와 자발적인 봉사가 우리 미래의 위상이고 역량이며,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행동을 강조하며 계리사회 역시도 더 좋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며 인사말을 마친다.

□ 의결사항

[의안1] 2016년 결산의 승인

- 회장
 - 안건을 부의하며, 세부사항은 사무국장에게 설명을 요청하다.

- 사무국장
 - 결산의 승인은 정관 제13조 3항에 의거한 총회 의결사항임을 설명하고, 2016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을 보고하다.
(정기총회 자료의 2016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자료 참조)

- 감사
 - 2016년도 결산관련 자료(회계관련 서류 및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정관 및 회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되었음을 보고하다. 다만, 계리사회 자산 수익률을 자체적으로 계산하여 본 결과, 연 1.2% 정도의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자산 운용에 대한 검토가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다.

- 회장
 - 결산자료는 정용호 감사님께서 약 10일에 걸쳐 감사를 실시, 이후 운영위원회 검토 및 이사회 심의되었음을 설명하다.
 - 제안된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여부를 묻고, 전원 이의 없으므로 제 1호 안건을 승인하다.

[의안2] 정관 개정 건

- 회장

- 안건을 부의하며, 세부사항은 사무국장에게 설명을 요청하다.

- 사무국장

- 정관의 개정은 정관 제13조 1항에 의거한 총회 의결사항임을 설명하고, 총 3건의 정관 개정 사안(제5조(회원) 자격 요건의 변경, 제3조(사업) 항목 신설, 정관 내 명칭 변경 등)이 있음을 설명하다.
- 첫 번째로 정관 제5조(회원) 자격 요건의 변경에 대해 계리사 자격요건은 보험업법에 규정되어 있고, 자격시험 요건은 보험업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본회 정관 제5조(회원)에는 모두 보험업법시행령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함을 설명하고, 추가적으로 준회원 자격 요건 범위 중 기존 상품·계리 관련 업무 종사자에서 리스크 관리 업무를 추가하여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을 설명하다.
- 자세한 사항은 자료의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기를 요청하다.
- 두 번째로 정관 제3조(사업) 항목에 '국제계리사회와의 협업을 통한 합리적 계리 실무기준 수립'을 신설하고자 함을 언급하고, IFRS17, 새로운 지급여력제도의 도입 등 국제기준과 부합하는 한국의 계리 실무 기준 수립 시 컨트롤 타워로서의 계리사회 역할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을 그 배경으로 설명하다.
- 자세한 사항은 자료의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기를 요청하다.
- 마지막으로 정관 내 보험계리사 명칭을 통합개념인 계리사로 변경하고자함을 언급하다. 그 배경으로는 보험계리사라는 명칭이 단순히 보험 분야로 업무 범위가 한정되는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설명하다.

- 단, 법령과 연계된 부분은 보험계리사 용어를 유지할 것임을 설명하고, 정관 이외의 기타 제반규정인 윤리규정, 연수규정 등 상의 용어도 함께 변경할 것임을 설명하다.

- 자세한 사항은 자료의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기를 요청하다.

- 회장

- 첫 번째 정관 개정 사항인 정관 제5조(회원)에 대해 의견을 묻는다.

- 두 번째 정관 개정 사항인 정관 제3조(사업)에 대해 의견을 묻는다.

- 마지막 정관 개정 사항인 명칭 변경에 대해 의견을 묻는다.

- 제안된 정관 개정 안건 중, 각 3건의 항목에 대해 모두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제 2호 안건을 승인하다.

[의안3] 임원의 선임 및 해임

- 회장

- 마지막 안건인 임원의 선임 및 해임 중, 세부 안건인 감사의 선임건을 부의하며, 세부사항은 사무국장에게 설명을 요청하다.

- 사무국장

- 감사의 해임 및 선임 건은 정관 제13조 2항에 의거한 총회 의결사항임을 설명하다.
- 운영위원회 이유문 감사께서 2016년 12월 21일, 감사직 퇴임 의사를 밝히셔서 신규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메리츠 화재 전무이자 본회 이사인 천병호 전무를 후임 감사로 상정하고자 함을 설명하다.
- 새로 상정된 감사의 임기는 정관 제26조에 의거하여 전임자의 잔여임기인 2018년 3월까지 임을 추가로 설명하다.

- 회장

- 감사의 해임 및 선임 건에 대하여 이의 여부를 묻고, 전원 이의 없으므로 제 3-1호 안건을 승인하다.
- 마지막 안건인 임원의 선임 및 해임 중, 세부 안건인 이사의 선임건을 부의하며, 세부사항은 사무국장에게 설명을 요청하다.

- 사무국장

- 이사의 해임 및 선임 건은 정관 제13조 2항에 의거한 총회 의결사항임을 설명하다.
- 2017년 정기총회 시, 임기만료 이사 22명, 중도 퇴임 이사 2명 등 기존 임원에 대한 연임 및 퇴임을 결정하고 신규 이사를 선임하고자 함을 설명하다.

- 이사의 선임 기준은 첫 째, 본회 법인 회원사를 대표하시는 분, 둘째, 정책 및 제도 측면을 고려, 마지막으로 본회에 기여도가 크신 분을 가급적 모실 수 있도록 하였음 설명하다.
- 임기 만료 이사 중, 연임 이사 15명, 퇴임 이사 7명, 중도 퇴임 이사 2명으로 신규 선임 이사는 9명임을 설명하다.
- 자세한 명단은 자료의 별첨을 참고하기를 요청하다.

- 회장

- 이사의 해임 및 선임 건에 대하여 이의 여부를 묻고, 전원 이의 없으므로 제 3-2호 안건을 승인하다.
- 이상으로 의결안건에 대한 처리를 모두 마치며 사무국장에게 보고사항에 대해 설명해줄 것을 요청하다.

□ 보고사항

- 사무국장

- 2017년도 사업방향과 사업계획을 보고하다.

(정기총회 자료의 2017도 사업계획 참조)

- 보고를 마치고 회장님께 마무리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회장

- 사무국장께서 설명해주신 2017년 사업계획에 대해 각 세부 항목 하나하나 심혈을 기울여 추진할 것임을 설명하고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을 강조하다.

- 끝으로, 다시 한 번 정기총회에 참가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다.

□ 폐회 선언

- 회장

- 회의를 종료하고 폐회를 선언하다.

<별첨> 제 54기 정기총회 자료 1부. 끝.